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2016년 4월 pp.163~192

한국세무학회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

정지선** · 윤성만***

<요 약>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지 약 40년 가량이 지났으며, 우리나라의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 등으로 이용한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한 금지금 등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징수제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탈루문제가 더욱 심각한 거래단계는 B2B 거래보다는 B2C 거래일 것이다. 왜냐하면, B3C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면 더 이상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3C거래에서도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의 경우에는 B2B의 거래와 B2C의 거래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B3C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히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시행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거래 및 결제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행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의무자는 카드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대리징수세율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한 10%를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조기 결제 및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2014-0392).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stopline@uos.ac.kr, 주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ysm6123@seoultech.ac.kr, 교신저자

이러한 도입방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매출 양성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용 또는 카드매출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과 함께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신용카드사, 체납세액, B2B, B2C

I. 서 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지 약 40년 가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유럽형을 도입하였는데, 동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과 거래징수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징수제도는 거래징수하는 사업자가 고의적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¹⁾ 등을 이용한 전문적·집단적인 탈세가 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B3B거래 중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지금·고금·구리스크랩 및 철스크랩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와 납세담보제도를 통하여 B3B거래에 있어서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B3B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B2C)의 거래에서는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부가가치세 탈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범진과 함영복, 2000).

B3C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징수제도의 한계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탈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1) 본 연구에서 “폭탄업체”의 의미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예수받은 후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 등의 방법으로 사라지는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김재진(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2)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 거래에 철스크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가 매입자납부제도와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입하는 사업자가 매입대금을 결제하면서 매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대리징수제도는 신용카드사 일방적으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사와는 상관없이 징수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둘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와 카드를 요하지만 대리징수제도는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매입자납부제도는 현금결제에 경우에도 매입자가 납부하는 방법이지만 대리징수제도는 신용카드 거래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매입자납부제도는 거래의 재화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대리징수제도는 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기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경제여건 때문에 세수결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액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 국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국내경제는 당분간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의 세수결손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하였고, 결손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수결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바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체납발생액과 체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입대비 체납발생비율은 13.31%로 다른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국세청, 201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 총액은 2010년에는 62,740억원, 2011년에는 67,070억원, 2012년에는 71,360억원, 그리고 2013년에는 74,48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 세목의 체납발생총액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점유비율은 2010년에는 28.2%, 2011년에는 28.7%, 2012년에는 28.3%, 그리고 2013년에는 29.5%로 다른 세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성명재, 2013).

이와 같이 체납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카드강과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금탈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위장가맹점을 통한 카드강³⁾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른바 폭탄업체를 통한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부가가치세 납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매년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기간세제이며, 다른 세목의 선행세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방지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체납방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B3C거래에 있어서 거래징수제도를 보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징수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지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와 그러한 풍선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을 논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래징수제도의 현황과 동 제도의 문

3) 카드강이란 신용카드를 물건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

4) 탈세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카드강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김재진(2010)의 연구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리징수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대하여 대상업종과 세율 및 대리징수의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 및 풍선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의 의의

거래징수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때에는 사업자는 그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부담이 되지 않지만,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중간단계 사업자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최종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다.

한편, 다단계거래세 체계하에서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징수제도가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5)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6)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징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징수제도에 따라서 조세부담은 전전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게 된다. 즉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거래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은

-
-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4.01.01 [법률 제12167호, 시행 2014.01.01.]
 - 6)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4.01.01 [법률 제12167호, 시행 2014.01.01.]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최명근과 나성길, 2007).

그러나 이러한 거래징수제도는 본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유통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 소비세제로서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통단계별로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징수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자료상과 폭탄업체 등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김재진, 2010).

둘째, 현재의 거래징수제도 하에서는 중간에 폭탄업체 등이 존재는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기은선 등, 2015).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금 등 일부 품목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철스크랩도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입자납부제도는 B2B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B2C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거래징수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의 손실만 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특성상 현재와 같은 거래징수제도를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을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오히려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직접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처럼 자신의 소득에서 납부하는 것처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하여 체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즉 간접세로서 사업손실과는 무관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래징수시점부터 신고납부시기의 사이에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는 자신의 매출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목에 비하여 체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유찬과 장근호, 2006).

Ⅲ.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1. OECD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OECD의 지불대행기관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논의는 소비과세 관련 연구에서 그 초기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OECD는 전자상거래 등 국제거래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고, B2C 전자상거래의 과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B2C 과세를 위하여 원격지 등록제도(remote registration)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둘째, 공급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이를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tax at source and transfer)이다. 셋째, 제3자가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각 소비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안(collection by third parties)이다. 넷째, 전자상거래가 발생할 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금을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금융기관이나 기타 제3의 기관을 통해 과세당국에 송금하는 방법(technology-based or technology-facilitated solutions)으로, OECD는 이러한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홍범교 등, 2011).

신용카드회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의 형태는 위의 4가지 방안 중에서 제3안과 제4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으로는 신용카드 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의 기관이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뒤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제3안), 거래가 발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계산하여 이를 과세당국으로 바로 이전하는 방식(제4안)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제3안의 경우 제3자가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역할이 핵심이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행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며, 조세(부가가치세)의 징수권한을 제3자인 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및 징수세액을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발생 이자 등의 문제를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제4안의 경우 결제대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거래시점에서 세액을 바로 산출하여 거래가액과 세액을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리한 세액을 과세당국에 바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제3안에 비해 행정·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OECD의 연구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세 과세방안이라고 하지만, 제4안에서 전자상거래라는 상황을 배제하고 국경 내의 실물거래 등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지불기관 등 제3의 기관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EU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탈루행위의 억제 및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등 징수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현대화를 위한 연구 및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로서 EU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기관의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된 뒤 과세관청에 이전되도록 하는 “RTvat(A Real-Time Solution for improving collection of VAT)”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EU에서 제안되었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제도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제3자를 원천징수의 주체로 참여시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OECD의 제3안 및 제4안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RTvat은 모든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가 요구되고, 지불대행기관과 같은 중개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분리하여 과세당국으로 직접적으로 예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기은선 등, 2015). 이러한 RTvat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였는데, 모든 B2C(business-to-consumer) 거래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도 제3자를 활용하고 있다.

RTvat 도입의 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행정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EU에서의 사업자 실종 등 부가가치세 탈루로 인한 재정손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의 연구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부과액과 징수액간의 차액(VAT GAP)은 약 193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EU GDP의 1.5%를 초과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에서 즉시징수(RTvat)를 위한 방식 중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지불대행기관을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디지털 공급에 있어서 특히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사례로 제시된다(<http://www.rtvat.net/>). RTvat project는 은행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사업자 실종방식 등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의 모든 디지털 공급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전자적 지불방식은 e-commerce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RTvat은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온라인 공급업체 단계에서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제거하는 대신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대금지불 단계에서 온라인 지불을 담당하는 조직인 은행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즉시 징수를 구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온라인 결제방식은 KYC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결제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고객이 그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보안 지불 영역에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할 경우 그의 계좌 개설정보 등에 기반하여 은행정보(지역 등)를 확인함으로써 KYC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식별하게 된다. 그 후 공급업체는 결제 시스템상에서 세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입력하

게 되고, 전산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자동적으로 산출하여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이를 징수하게 된다. 고객은 거래대금을 결제(세금을 포함한 금액)하게 되는데, 이때 공급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가액만을 전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과세당국에 전달됨으로써 즉시 징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RTvat의 이행에 있어서 은행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은행은 사업자 고객으로부터 거래자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계좌에 예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구매자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징수시스템을 통해 거래대금에서 분리 예치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이전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혜택으로써, 사업자 고객의 재무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의 실제 재무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은행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⁷⁾

한편 RTvat의 기술적인 요소는 신용카드 업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동 인프라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은행 및 과세당국간의 실시간 자금전송 뿐 아니라 국경간 거래에 있어 central intra-EU 자금계정과 거주지국 서버를 기술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거래 관련 정보의 전송가능성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업계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스템은 2~3초안에 작동이 가능한데, RTvat 운용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일간(daily)으로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현재의 시스템에 연계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요소는 “fraud scrubbing” 또는 잠재적인 탈루 패턴(potential fraud pattern)의 검출 및 경보시스템의 사용에 있다. 이러한 패턴의 검출 및 경보시스템이란 RTvat에 있어서 각 부가가치세 ID(사업자번호에 해당)에 대한 거래의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 통합된 fraud scrubbing applications을 개발하여 국세청 등에 부가가치세 ID 개별 거래에 적용함으로써 의심행위 또는 잠재적 부정행위의 패턴이 발견될 경우 세무당국에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3. 라틴 아메리카(에콰도르)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제도에 있어서 OECD의 제3안과 제4안의 형태에서 진전된 신용카드 회사 등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는 국가군은 에콰도르와 같은 남미국가이다(Richard, 2011).

에콰도르의 경우 1997년에 부가가치세에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7) <http://www.rtvat.net/european-vat-eu-banks-credit.html>

에콰도르의 원천징수제도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원천징수 대리자로 모든 신용카드·직불카드 중개자(credit·debit card intermediaries)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 구매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해 이루어질 때, 에콰도르 원천징수제도에 따르면 구매 지급액에서 부가가치세(일부 또는 전부) 부분이 즉시 분리된 뒤 재무부로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자는 신용·직불카드 회사의 중개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대리납부 됨에 따라 매입자 또한 부가가치세 제도에 있어 중간단계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해당하게 된다.

에콰도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 실종(missing traders)”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 발생거래를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고 에콰도르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⁸⁾ 등 남미국가에서 광범위한 부가가치세 회피·탈루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부가세 탈루·회피 행위가 심각한 경우 이러한 에콰도르 방식의 신용카드 회사 등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가 채택되었다. 원천징수 대리자로서 제3자인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사를 중개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에콰도르의 원천징수 대리인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에콰도르 tax commissioner인 Carlos Marx Carrasco에 따르면 2010년도 소득세 탈세규모는 45%로 추정되었는데,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21%로 소득세 탈루규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 감소효과를 입증하는 성공을 거두었다.⁹⁾ 에콰도르의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 원천징수 방식의 예외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은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원천징수제도상의 문제인데, 에콰도르 방식의 지불대행을 통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 의해 과소 보고되거나 보고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적인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콰도르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대리인의 종류는 총 5가지 유형으로 사법·입법·행정부·공공기관과 같은 public entities, 조세쟁송의 판결에 의해 지정된 납세의무자(개인, 민간기업 등), 신용·직불카드 회사, 보험회사, 그 외 법규(내국세법, 조세예규판례 등)에 의해 규정된 기타 납세의무자가 존재한다.

에콰도르의 원천징수 비율은 30%와 70% 또는 100%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tax commissioner에 있다. 원천징수 대리자는 판매자의 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판

8) 베네수엘라 또한 에콰도르 방식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전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 중 50%~60%가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자 실종 방식의 탈루행위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9) 그러나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에콰도르의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는 EU와 비교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PwC 연구에 의하면 EU 국가의 부가가치세 탈세 비율은 2%(스페인)에서 30%(그리스) 수준이며, EU 평균은 12%이다.

매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재무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된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것처럼 소규모 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가 극심한 상황이었던 여타 남미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방식의 예외적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직불카드 회사 뿐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 회사 등으로 원천징수 대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3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미국가 뿐 아니라 터키와 러시아 등에서도 동 제도와 유사한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비거주 공급업자(non-resident suppliers)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에콰도르 방식의 신용카드 회사 등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는 라틴아메리카 외의 국가에 소재한 직불·신용카드 중개인에게 까지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대리납부 의무를 확장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콰도르의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는 초기 OECD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과세 연구결과로 제시되었던 제3자 또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전자적 기반을 통해 부가가치세 발생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재무당국에 이전하는 방안이 현실화되어 운영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시사점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거래징수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징수방법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직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매우 우수한 방법이지만,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회피 또는 탈루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일정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B2B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자납부제도는 도입하여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B3C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징수제도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탈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OECD와 EU 및 라틴아메리카의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모든 국가에서 B3C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탈루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의 거래징수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거래징수제도 하에서는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자 실종(missing traders) 방식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발생거래를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B3C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회피 또는 탈루문제가 심각하며, B3C거래에 있어서 거래징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에콰도르 등 라틴아메리카의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의 문제점, 특히 B3C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탈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에콰도르 등 남미의 국가에서 신용카드 회사 등 지불대행 기관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징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에콰도르에서 B3C거래에서 업종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탈루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세율을 높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이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수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경우 대리징수의무자의 종류는 총 5가지 유형으로 사법·입법·행정부·공공기관과 같은 public entities, 조세징송의 판결에 의해 지정된 납세의무자(개인, 민간기업 등), 신용·직불카드 회사, 보험회사, 그 외 법규(내국세법, 조세예규판례 등)에 의해 규정된 기타 납세의무자가 존재한다. 만약, 우리나라에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리징수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에콰도르의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할 경우 그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경우 부가가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징수하지는 않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율을 한도로 하여 대리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율과 다른 세율로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V.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1.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체계와 도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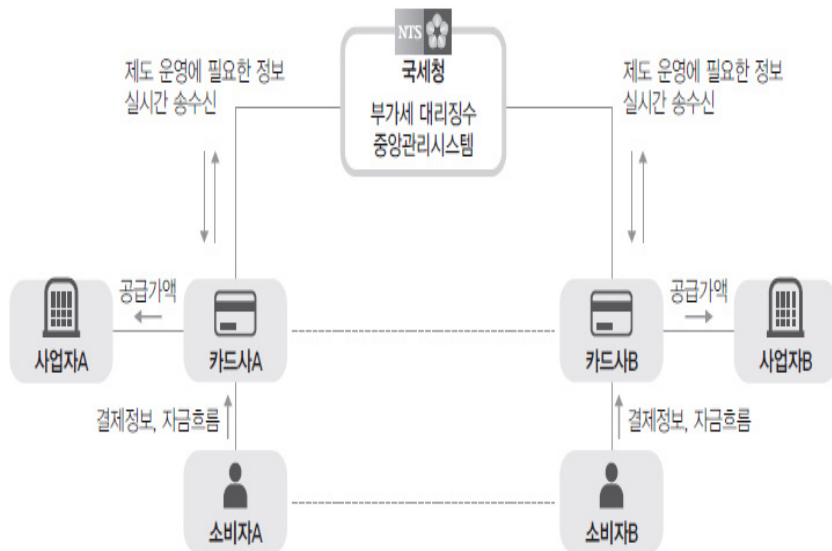
가.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체계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급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수취할 경우 대리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즉 공급대가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급자인 사업자는 전체 공급대가 중에서 결과적으로 공급가액만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리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대리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제도의 체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리납부 제도와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아래 <그림 1>과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림 1>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징수체계의 개념도



첫째, 소비자가 결제한 정보는 1차적으로 카드사에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단순한 결제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별 누적 거래정보도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카드사가 자신이 보유한 사업자별 결제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각 카드사가 결제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면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카드사를 통한 결제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세청에서 카드사별 결제정보를 모니터링 중에 이상거래 또는 부실거래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각 카드사가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카드사의 운영상 문제를 적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선정 등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국세통계와 신용카드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대리징수제도에 적합한 업종과 대리징수의무자 및 적용세율 등을 고려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효과와 제한사항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래징수제도는 부가가치세의 회피 또는 탈루 등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B3B거래에 있어서는 금지금 등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B3C거래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카드사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카드사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간세이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선행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2003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액 약 5조 2천억원 선을 하회하였던 것이 2004년부터는 평균 6조 7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세수부족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더구나 선행세제의 성격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원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10)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B3C거래에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거래징수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거래징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대리징수제도는 현재의 거래징수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징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있으며, 이러한 세수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세수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 등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높일 경우 경기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책목표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으로 체납을 방지하게 되면, 세율을 높이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축소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¹¹⁾

둘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납세편의와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김재진, 2010). 그러나 현재의 거래징수제도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또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 등을 통한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AT Gap을 이용한 2011년 부정환급과 폭탄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액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아래의 <표 1>을 보면, 2010년 VAT Gap비율은 17.8%로 산출되었고 이를 2011년의 이론적 부가가치 징수액에 적용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519,069억원을 산출하였다. 여기에 2010년 VAT Gap비율 17.8%를 적용하여 2011년 VAT Gap 112,402억원을 추정되었다. 여기에 2011년 결손처분 및 미정리체납액을 차감하여 2011년 부정환급이나 폭탄업체 등으로 인한 VAT탈루액 78,223억원을 추정하게 되었다. 이는 2011년의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519,069억원의 약 15.07%에 달하고 있어 상당 규모의 부가가치세의 조세회피 행위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카드사 등의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거래징수제도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탄업체 또는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폭탄업체 또는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11)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방법은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결제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현금결제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살펴보건데, 현금결제를 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세원 탈루를 방지하여야 하지만,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결제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원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자들의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표 1〉 VAT Gap을 이용한 부정환급, 폭탄업체 등의 VAT 탈루액 추정결과
(단위 : 억원)

〈패널 A〉 2010년 VAT Gap비율의 추정	
구 분	금 액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	578,041
(±) 추가조정	(+)19,463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A)	597,504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	(-)491,212
VAT Gap(B)	106,292
VAT Gap비율(B/A)	17.8%
〈패널 B〉 2011년 : 부정환급, 폭탄업체 등의 VAT 탈루액 추정	
구 분	금 액
조정된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액(A)	631,471
(-)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A×17.8%)	(-)519,069
VAT Gap(B)	112,402
(-) 2011년 결손처분 및 미정리체납액	34,179
부정환급, 폭탄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액	78,223

주1) 자료출처 : 김재진(201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p.33

넷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적 비용은 효율비용과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납세의식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사업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제대로 될 것이며, 그에 부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징수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세의식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이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거래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채화 등을 공급할 때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간접세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전체 금액을 징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세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금지금 등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던 구조에서 매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전환됨에 따라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신의 매출액인 공급가액만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자(은행)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정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

일곱 번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세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인 위장가맹점의 수가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위장가맹점을 가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장가맹점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보다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자나 금융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납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제도인 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카드사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경우 카드사 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드사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는 부가가치세의 탈루 방지와 징세의 편의 및 납세의 편의 등에 그 취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고의 이익을 위하여 카드사 등의 일정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 등의 대리징수제도의 본질은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카드사 등은 소비자의 인적정보 등을 독점하고 국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는 등 공적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카드사 등이 받는 수수료 속에는 이미 사회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카드사 등이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점과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바, 카드사 등의 징세협조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규언 등, 2000).

셋째, 신용카드사 대리징수제도는 매입이나 매출거래로 인한 대금결제시점에 징수가 되기 때문

에 매출자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lackburn et al, 2005). 즉 매출자는 공급하는 재화를 매입할 때 이미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동 재화를 공급할 때 매출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 만큼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현행 조기환급제도는 최소 3개월의 유동성 제한기간이 있다. 따라서 조기환급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대리징수의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 및 대상 업종

가.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의 경우에는 B2B의 거래와 B2C의 거래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B2B의 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현재 금지금·고금·구리스크랩 및 금스크랩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탈세확률이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매입자납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연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B2B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다(정지선 등, 2014).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심각한 품목으로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리징수제도가 아니라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대리징수 대상 업종

국내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결제규모는 199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 2>에서와 같이, 국민 가처분소득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실적 $((C+D)/A)$ 이 1990년도에는 3.1%였던 것이 2000년에는 9.3%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 35.4%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2014년 말 현재에는 51.2%까지 상승하였다.

〈표 2〉 신용/직불카드 이용실적

(단위 : 10억원, %)

연도	국민가처분 소득(A)	민간최종 소비지출(B)	신용카드(구매)			체크 카드(D)	(C+D) /A ^{주1)}	(C+D) /B ^{주1)}
			계(C)	일시불	할부			
1990	174,018.9	98,049.5	5,323.1	3,006.8	2,316.3		3.1	5.4
1991	211,042.8	118,654.6	6,594.1	4,133.1	2,461.0		3.1	5.6
1992	239,086.3	137,302.4	7,981.6	5,135.8	2,845.8		3.3	5.8
1993	270,145.7	156,413.6	12,264.6	6,942.7	5,321.9		4.5	7.8
1994	319,437.8	187,036.7	18,875.0	10,958.6	7,916.4		5.9	10.1
1995	366,889.5	219,889.6	25,151.7	15,049.2	10,102.5		6.9	11.4
1996	408,069.9	252,658.2	32,624.3	20,346.0	12,278.3		8.0	12.9
1997	446,064.3	279,563.6	38,180.0	24,320.7	13,859.3		8.6	13.7
1998	427,089.0	261,382.1	30,830.8	20,669.5	10,161.3		7.2	11.8
1999	471,720.4	299,760.1	23,539.3	16,830.0	6,709.3		5.0	7.9
2000	521,717.2	341,441.8	48,765.1	33,694.9	15,070.2		9.3	14.3
2001	562,163.9	376,802.9	155,052.3	110,824.0	44,228.3		27.6	41.1
2002	628,067.5	423,156.5	259,461.7	183,296.5	76,165.2		41.3	61.3
2003	665,177.5	434,864.4	214,084.2	170,297.9	43,786.3		32.2	49.2
2004	719,941.5	449,981.4	157,691.2	125,793.7	31,897.5		21.9	35.0
2005	750,310.7	480,170.0	258,222.8	213,022.0	45,200.8	7,593.7	35.4	55.4
2006	790,894.7	509,906.9	283,204.2	234,177.0	49,027.2	12,595.1	37.4	58.0
2007	857,994.0	546,429.2	316,162.1	258,591.6	57,570.5	18,840.0	39.0	61.3
2008	900,584.9	579,053.4	360,787.9	291,757.6	69,030.3	27,872.2	43.2	67.1
2009	924,761.3	594,882.6	376,589.8	304,917.6	71,672.2	29,465.8	43.9	68.3
2010	1,028,321.7	636,712.7	412,441.7	330,104.6	82,337.1	51,480.4	45.1	72.9
2011	1,082,939.3	679,141.5	442,599.6	354,779.0	87,820.6	66,917.4	47.0	75.0
2012	1,118,055.4	707,614.0	478,059.2	382,778.3	95,280.9	82,277.8	50.1	79.2
2013	1,155,996.0	727,799.9	489,507.5	401,624.2	87,883.3	92,659.9	50.4	80.0
2014	1,200,190.4	748,906.5	501,220.3	409,009.5	92,210.8	112,684.0	51.2	82.0

주1)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반영

주2) 자료출처 : 여신금융연구소(2015) 여신금융 보고서, p.162.

이러한 카드사용의 급격한 증가추세에서 업종별 카드매출액 현황을 나타낸 <표 3>을 보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의 경우 2009년에는 약 119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 말에는 약 44%가 증가하는 172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식업의 경우에는 2009년 대비 2013년에는 약 53%까지 급증하여 약 77.4조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카드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매업	1,197,317	1,386,973	1,523,287	1,659,688	1,724,111
음식업	506,214	563,716	650,752	709,085	774,432
숙박업	43,727	44,563	62,891	71,491	75,362
병의원	204,798	202,715	226,456	247,378	266,163
학원	77,072	88,293	86,993	88,151	89,473
전문직	53,530	2,853	2,704	3,187	3,875
서비스업	228,804	176,863	190,277	208,645	223,898
기타	1,483,421	2,102,699	2,212,926	2,385,532	2,501,933
서비스업	228,804	176,863	190,277	208,645	223,898

주1) 자료출처 : 국세통계연보(9-9-3)

이처럼 카드사용과 카드매출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래결제환경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카드사의 대리징수제도를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인 B3C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히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재진, 2010). 그러나 모든 업종을 일괄하여 적용할 경우, 거래 및 결제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행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점진적인 시행확대 방법의 하나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를 초기에 적용할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크게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종과 카드결제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및 결제정보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리징수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매업이면서 카드거래의 빈도 또는 거래금액 수준이 높은 업종이다.

둘째, 음식업 중에서 결제정보가 음성화되기 쉽고 현금결제 유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신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업종별 카드결제 규모를 나타낸 <표 4>를 보면, 카드결제 상위 10대 업종 중에서 주유소 업종의 카드매출액 규모가 일반음식점과 인터넷상 거래업 다음으로 크며 2014년 말 현재 약 47조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유소는 소매업으로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 카드결제 규모의 추세에서도 주유소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 주유소 카드결제금액이 2013년 대비 약 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휘발유가격이 2013년 1리터당 1,886.98원에서 2014년에는 1리터당 1,591.98원으로 약 15.63%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¹²⁾ 또한, 면세유의 경우 조직적인 탈세 범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상 수송업체 1개소, 해상 급유업체 16개소, 국내 대형 정유사 2개소, 주유소 150개소가 가담한 조직적 탈세 범죄로, 불법으로 유통된 해상 면세유는 약 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확인된 액수만 약 2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소비자에 인접한 일반주유소까지 개입된 조직적 탈세범죄의 경우에는 B2B거래에 적용되는 매입자납부제도만 가지고는 탈세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매업 중에서 카드거래량이 많은 업종인 주유소업종은 대리징수 대상 업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주유소의 거래승인 건수를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에 3.3%가 증가한 7.08억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유소의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결제금액이 감소한 현상을 의미한다.

13) 면세유 수입업체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및 중국 등 해외 선박으로부터 유류(연료유) 공급(주유)의뢰를 받으면 수입업체는 해운법에 의한 유류수송업 허가가 있는 선박으로 하여금 유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송선은 비밀창고 등을 이용하여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외국국적 선박의 기관장과 공모하여 선주 몰래 유류를 횡령한다. 이렇게 빼돌린 유류는 항만부대사업자인 선박급유업체에서 시중가격보다 45%싼 가격으로 매입한 뒤 최종소비처인 각종 선박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중가보다 약 25% 쉰 가격으로 공급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장물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법유통을 유도하는 구조였다. 또한, 이와 같이 최종 소비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에 해당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이때 해상급유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해상수송선으로부터 절취되거나 횡령된 장물은 유류의 구입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득이 육상 유명 대형 정유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며, 이 때 육상 정유사는 마치 정당하게 유류가 거래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중간 브로커를 통하여 해상장물에 해당하는 양만큼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유류대금을 브로커를 통하여 받고 (이때 중간브로커는 유류대금의 3%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챙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가 지급된 유류는 무자료 유류(일명 덩핑유)로 일반주유소로 유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무자료 유류 유통은 정유사, 탱크로리 기사, 브로커와 일반주유소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이를 처분하게 되며 대형정유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해상급유업체가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시 사용하는 수법으로 장물을 처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해양경찰청, “국내 최대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조직 적발 검거”,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05.7.27.).

〈표 4〉 10대 업종 카드매출액 현황

(단위 : 조원)

업종	2011	2012	2013	2014
일반음식점	55.69	64.36	71.13	79.18
인터넷상거래	34.5	44.16	40.92	49.83
주유소	40.89	49.07	48.75	47.29
대형할인점	30.53	32.07	32.7	33.07
슈퍼마켓	15.41	20.34	22.39	24.42
공과금서비스	8.07	19.23	19.17	22.63
국산신차판매	15.29	17.64	19.7	22.25
일반백화점	18.97	15.37	13.74	18.04
보험	14.1	15.54	15.86	16.64
약국	9.65	11.87	12.52	13.13
상위10대	243.11	289.67	296.89	326.49
카드승인금액	458.77	520.9	545.17	578.58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편,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이면서 거래자 정보 또는 결제정보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으로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오락서비스 업종의 카드매출현황을 보면(<표 5>), 유흥 및 사치업은 2010년에 약 4조 2천억원, 2014년에는 약 3조 2천억원으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¹⁴⁾

〈표 5〉 오락서비스 업종의 카드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유흥 및 사치업	42,282	40,110	36,638	34,925	32,487
골프장	20,559	21,854	21,675	21,420	20,808
노래방	10,995	11,393	11,138	11,032	10,798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6>은 주점업종의 카드매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점업의 매과세기간별 카드매출액의 규모는 4조 9천억원에서 5조 3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카드매출의 50.58%가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약 3조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타 주점업의 경우에는 약 1조 5천억원에서 2조

14) 유흥 및 사치업에 주점업이 일부, 오락서비스업종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무도유흥 주점업의 경우 오락서비스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천억원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점업은 최종소비자가 사용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결제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다. 결국 현금매출로 인한 과소신고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 대상 업종으로 이러한 주점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주점업의 카드매출현황

(단위 : 억원)

과세기간 구분	계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2008-01	50,517	2,847	32,448	15,222
2008-02	53,342	3,044	33,002	17,296
2009-01	49,274	2,562	29,648	17,065
2009-02	52,104	2,748	31,648	17,708
2010-01	50,873	2,326	30,106	18,441
2010-02	55,341	2,576	31,836	20,929
2012-01	51,966	1,989	27,347	22,630
2012-02	53,843	2,118	27,235	24,489
평균	417,261	20,210	243,271	153,780

주1) 자료출처 : 국세통계연보

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제도를 적용할 업종을 종합해 보면, 주유소와 주점업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카드사용 또는 카드매출 규모가 높은 업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생활밀접 업종으로 국민 대부분이 거래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대리징수제도의 적용업종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점업의 경우에는 카드매출 규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최종소비자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업종이다. 또한,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출금액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다. 이는 해당 업종과의 거래정보 또는 현금거래 비율이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과소신고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징수제도를 통한 카드매출거래를 양성화하는데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다. 과세와 면세의 구분 문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를 함에 있어서 적용 사업장에서 과세거래 뿐만 아니라 면세거래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일반적인 과세매출 이외에 면세매출이 존재할 경우에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리징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업자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카드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개별적인 정보인 세부 거래내역까지 카드사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및 사업정보를 제3자가 보유하게 되고, 이러한 제3자가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안관리가 취약할 경우에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 적용업종에서 면세거래의 적정한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정상거래를 유도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는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구분 결제할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즉 과세거래와 면세거래의 구분기준을 사업장에서 사전에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을 안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드사의 정보보안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리징수 업체에서 취득한 개별 사업장의 상세한 거래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대리징수의무자

아래의 <표 7>은 2014년 9월말 현재 신용카드사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대리징수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사¹⁵⁾가 되며, 현재 국내 총사업자는 23개사가 있다.

<표 7> 신용카드사 현황

(2014. 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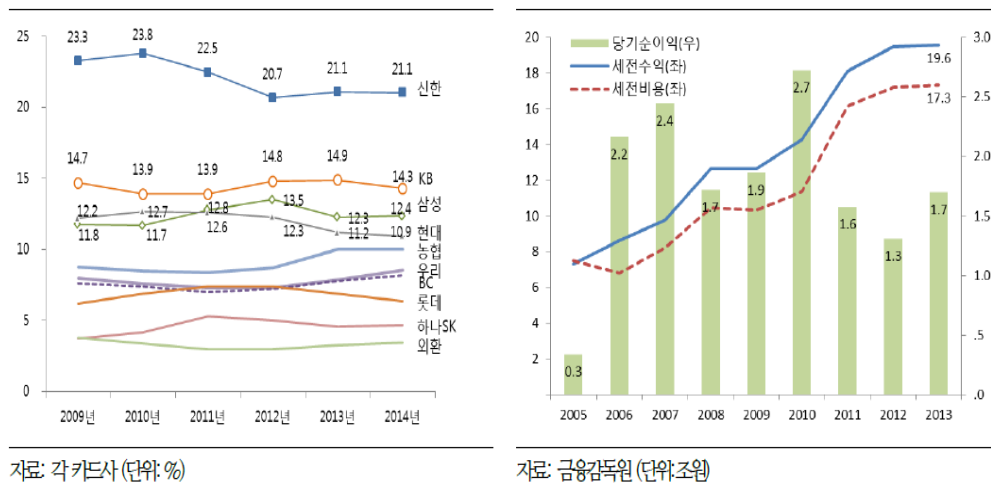
구 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 제휴)
전업 카드사	은행	6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산은캐피탈
	기업	3	롯데, 삼성, 현대
	소계	9	
겸영 은행		11	경남,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전북, 제주, NH농협
유통계 겸영신용카드업자		3	백화점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수 (전업 및 겸영)		23 (20)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에서 신용카드업을 대상으로 한다.

- 주) 1. 산은캐피탈 :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법인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허가(2002. 1월)
 2. LG카드 : 신한카드와 통합(2007. 10. 1)
 3. 하나SK카드 : 하나카드로 출범(2009.11.2) 후, 하나SK카드로 사명 변경(2010.2.19.),
 하나카드로 사명변경 및 외환카드 흡수·합병(2014.12.1.)
 4. KB국민카드 :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2011.3.2.)
 5. 우리카드 :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2013.4.1.)
 6. 외환은행 : 하나카드와 합병(2014.12.1.)
 7.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 2013. 6월말 기준(기존 9개사 중 6개사 등록 취소 예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 허가 또는 등록

이러한 신용카드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추이를 나타낸 아래의 <그림 2>를 보면, 신한카드가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KB카드가 높다. 또한, 수익추세를 보면 카드사는 2010년에 최고치의 실적을 나타내다가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2012년부터는 다시 수익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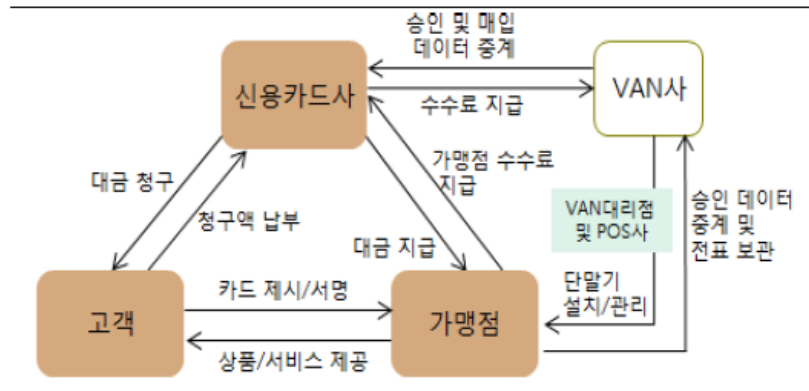
<그림 2>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추이



특히, 신용카드사를 대리징수의무자로 지정할 경우, 단말기 관리와 승인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VAN사업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VAN사업자 비록 대리징수의무자는 아니더라도 대리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또는 거래정보 관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리징수 의무자에 상당하는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에서 카드사는 전표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VAN사는 단말기 설치, 전표 및 서명 이미지 보관, 데이터 중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3〉 신용카드 결제체계



주1) 자료출처 : 송인호(2014), “VAN시장의 구조개선과 공공 VAN사업의 역할”. p.11.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적용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과거에는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금결제단계가 소비자 → 사업자 → 국가의 순서였지만, 신용카드 거래가 보편화된 현재에 있어서는 소비자 → 신용카드회사(전자금융업자) → 사업자 → 국가의 순으로 변화하여 신용카드를 통하여 수입금액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인 신용카드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의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징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김재진, 2010). 부연하면, 신용카드가 대표적인 결제수단이 됨에 따라서 신용카드사를 대리징수 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징세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 경우 모든 신용카드사를 대리징수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현재 운영 중인 신용카드 회사는 모두 23개사로 모든 카드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는 영세·부실 카드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영세·부실 카드사에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카드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수손실 및 정부의 관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능력이 우수한 카드사를 대리징수자로 지정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리징수 현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카드사를 우수한 카드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경우에는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및 현대카드 등 14개 주요 신용카드사 카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¹⁶⁾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

한편, 대리징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¹⁷⁾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서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소득세법제162조의2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대리징수세율

카드사를 통한 대리징수제도에 적용할 대리징수 세율을 고려하기 전에 현행 부가가치세율과의 차별화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와 특정 재화의 거래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징수체계의 개선 때문에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납세자들로부터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징수체계인 금지금과 구리스크랩 등 취급 사업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았던 저율의 세율을 대리징수 대상자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 사업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리징수세율은 기존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한 10%를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조기결제 및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

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1조).

- 국세납부대행기관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사 :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하나SK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1.0%(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7%)

17) 신용카드 가맹점은 일반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 및 수기특약가맹점으로 분류된다. 먼저,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직불 및 선불카드 포함) 거래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하위가입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PG(Payment Gateway) 업체라고 한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편, 수기특약가맹점은 카드실물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회원의 서명이 생략된 신용카드 거래를 인정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항공사 등 예약매출이 많은 가맹점이나 통신판매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

18)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실시간 환급 정산제도

카드사 대리징수제도는 조기환급제도는 거래당사자간 카드매출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받는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고 공급가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공급자의 현금유동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¹⁹⁾ 따라서 대리징수제도에 있어서 조기환급제도는 이러한 현금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징수제도에 대한 조기환급제도는 다음과 같이 단기적,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단기적인 차원에서 아직 카드사와의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지만 여기에 “카드사 대리징수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환급이 되지 않지만 공급자의 현금유동성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²⁰⁾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카드사와의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B2B거래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에 실시간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에 필요한 거래증빙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탈루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조기환급제도보다는 간편하면서도 조속한 시일내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는 실시간 정산방식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의 거래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세액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산과정 없이 해당 사업자의 과거 매입세액만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고 바로 환급할 수 있다.

19) Blackburn et al.(2005)에 따르면 다른 대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82.9%의 영국 기업이 전통적인 분기별 세금계산서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세 지불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수치는 영국국세청이 2005년 750개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서 17.8%의 설문대상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시에 치명적이거나 중대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주된 원인을 예상치 못한 판매량 변동, 고객의 대금 지연 지급 등이라고 하였다.

20) 대리징수제도가 도입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조기환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V. 연구요약 및 결론

거의 모든 제도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제도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징수 후에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되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 세액만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B2B거래에 있어서는 금지금 등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각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B3C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탈루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특히 탈루가 심한 업종에 대하여는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탈세가 심각한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 이를 거래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결제 방식이나 대금이체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현재의 제도와 대리징수제도의 도입 이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종전과 달라진다. 즉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리징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결제금액 중에서 공급가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입금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카드사를 통하여 대리징수되어 국고에 납입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 중에서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행할 협력의무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용카드 회사의 경우에는 결제금액 중에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납입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카드사가 대리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사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액 만큼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기한의 이익을 보게 되기 될 것이다.

넷째, 국가인 조세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의 징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체납이 다수 발생하는 관련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파급효과를 통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 기은선 · 구자은 · 박명호. 2015.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 139-165.
- 김범진 · 함영복. 2000. “부가가치세 포탈방지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권 제2호 : 379-412.
- 김유찬 · 장근호. 2006.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자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215-231.
-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12.
- 김재진. 201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방안”,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 송인호. 2014. “VAN시장의 구조개선과 공공 VAN사업의 역할”. 여신금융 2014겨울 : 7-19.
- 성명재. 2013.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 189-223.
- 여신금융연구소. 2015. “신용카드”, 여신금융 2015봄호 : 160-167.
- 이전오 · 김완일 · 이강호. 2008.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 정규언 · 구상희 · 박정우. 2000. “국제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으로서 지급 기관 대리납부제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9권 제1호 : 111-132.
- 정지선 · 김진석 · 윤성만. 20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 최명근 · 나성길. 2007.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홍범교 · 김재진 · 김학수. 2011.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해양경찰청. 2005. “국내 최대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조직 적발 검거”,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 Blackburn, T.M., Petchey, O.L., Cassey, P. and Gaston, K.J. 2005. “Functional diversity of mammalian predators and extinction in island birds”. Ecology, No. 86 : 2916-2923.
- Richard T. Ainsworth. 2011. Vat Fraud As a Policy Stimulus-Is The Us Watching? Vat Withholding, RTVAT, and The Mitter Model”,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Working No. 11-08(February 24, 2011).

A Study on Applying VAT Charge System Using Credit Card Companies

Chung Ji Sun* · Yoon Sung Man**

—〈Abstract〉—

The evasion of value added tax from B2B trading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operates a payment system for the serious buyers of gold transactions, including some now.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B2C trading transactions collection system it will be the introduction of VAT collection agency system. Specifically,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following way.

First, to apply to transactions both in the case of the applicable transaction phase, between providers and operators trading (B2B) and Business and to—consumer (B2C) whether or multi whether the issue of whether to apply only to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Second, in applying the regulations in the trade of value—added tax collection agency B2C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t should be applied to all sectors, or whether the problem of VAT evasion is applicable only with respect to some heavy industries.

Third, the tax collection duty deputy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credit card companies.

Fourth, the agency collects tax rate measures to considering equity and other industries apply the benefits of various tax credits for maintaining the existing value added tax and the same 10% to mitigate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early settlement and payment of providers desirable something to do.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ystem of incentives and penalties together for cards or card sales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s caused by the balloon bisexual card sales that may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these measures. In particular, and these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penalties will apply to the gas station or pub operators, institutional incentives can consider from the consumer side and consumers on the use, including credit card in order to encourage use of credit cards, etc. Gas stations and taverns there is an additional reward payment methods and introduction to the income tax benefits for measures.

〈Key words〉 VAT, Reverse Charge System, Credit Card Companies, Default Tax, B2B, B2C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stopline@uos.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sm6123@seoultech.ac.kr, Corresponding Author